제4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관련 부산금융중심지 추진 방향

('26.5.18, 글로벌금융중심지팀, 안남현)

1 서론

□ 배경

○ 인터넷전문은행(이하 '인뱅')은 오프라인 지점 없이 인터넷·모바일 기반으로 영업하는 은행으로 한국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하'인터넷전문은행법')의 적용을 받음

○ 인뱅은 단순한 서비스 혁신이 아니라 ①금융 경쟁촉진, ②금융소비자 편익 증대, ③핀테크 산업 육성, ④신성장 동력 확보 등 산업구조 개선을 위한 수단으로 추진

○ 세계적으로도 유럽·미국을 중심으로 플랫폼을 활용한 수익 다변화 등 플랫폼·빅테크 경쟁 구조로 진화 중

□ 검토 목적

○ 금융위는 **네번째 인뱅** 인가 절차('24.12~)를 진행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예비인가 불허('25.9) 방침 발표

– 소호은행 등 4개의 컨소시엄이 예비인가 신청했으나 모두 불허

– 금융위는 시장상황,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권의 자금공급상황 및 은행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업자의 진입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신규인가에 대해 검토 예정

– 정치권 중심으로 제4인뱅 논의 재점화('26.4월 토론회 개최, 신장식 의원)

○ 이와 관련하여 금융중심지 부산의 관점에서 **수도권이 아닌 부산지역 내 신규 인뱅 유치**를 추진할 시점으로 인식

– 제4인뱅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부산 본사 유치** 또는 **부울경 기업 중심**의 **신규 설립**을 제안

○ 향후 제4인뱅 설립 추진이 재개될 경우를 대비해 설립 실패 사유와 설립방안 검토 필요

2 인터넷전문은행 성과

□ 기존 인뱅 영업 현황

○ 현재까지 인뱅은 케이뱅크('16.12)·카카오뱅크('17.4)·토스뱅크('21.6)로, 3사가 큰 폭의 **영업이익**('24년 3사 평균 약 2,600억원) **실현** 중

– 케이뱅크(1,330억원), 카카오뱅크(6,070억원), 토스뱅크(441억원)

○ (성장성) 인뱅은 출범 이후 일반은행 대비 매우 높은 성장세 기록

– '17~'24년 연평균 자산 성장률 : (시중) 9.9%, (지방) 6.8%, (인뱅) 154.6%

○ (수익성) 인뱅은 규모 대비 큰 IT 투자 등으로 영업초기 적자 기록. 2020년 흑자 전환 이후 수익성이 완만하게 개선

–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는 영업 3년차에 흑자 전환하며 수익성 개선

– 반면, 케이뱅크는 영업 5년차에 흑자 전환하였으며 카카오뱅크에 비해 지속적으로 낮은 수익성을 시현. 이러한 차이는 자본확충에 따른 규모의 경제 달성 시기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1)]

○ (건전성)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와 금리상승에 따라 연체율은 시중·지방은행 대비 높은 수준[2)]

– BIS비율은 케이뱅크와 토스뱅크의 경우 규제비율(총자본의 10.5%)를 상회하나 기존 시중(18%)·지방(15.5%)은행 대비 낮은 수준

(단위 : 조원)

구 분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영업개시	'17.4월	'17.7월	'21.10월
인가	'16.12월	'17.4월	'21.6월
총자산	24.3	61.0	31.1
총여신	15.7	42.6	14.8
총수신	21.9	53.4	28.5
자기자본	2.0	6.3	1.6
당기순이익(억원)	884	2,314	245
BIS 비율	13.86%	28.82%	14.69%

자료 : 금융위원회('24.6월말 기준)

1) 한국금융연구원(2024)
2) '24년6월말 기준 연체율 : 시중(0.32), 지방(0.66), 인뱅(0.73)

□ 인뱅 도입 성과[3)]

○ 2015년 인뱅 도입의 필요성으로 ①금융소비자 편의성 제고, ②은행산업 경쟁 촉진, ③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등 세가지 제시(금융위)

○ 금융소비자 편의성 제고

– (비대면 금융서비스) 은행 모바일앱의 사용자 편의성에 대한 소비자 평가는 인뱅 도입 전후 비교시 크게 개선

– (예대금리) 인뱅 영업 초기(2017~2019년)에만 고객 유치를 위해 타 은행 대비 높은 평균 예금금리를 제시. 대출금리는 '22년 이후에는 시중은행이나 지방은행 대비 높은 수준을 기록

– (중·저신용자 대출) 인뱅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공급 및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는 2021년 5월 당국의 정책발표[4)] 이후 이행실적에 대한 관리·감독이 시행되고 나서야 본격화

○ 은행산업 경쟁 촉진에 대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

– (시장집중도) 인뱅영업이 집중된 가계대출 시장에서 집중도는 하락하였으나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 대출 시장집중도 완화에는 영향이 미미

– (시장지배력) 2022~2023년 중 은행의 시장지배력이 약화되어 산업의 경쟁이 심화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인뱅 도입보다는 기준금리 인상 및 다양한 경쟁 촉진 정책[5)]의 영향일 수 있음

□ 인뱅 도입에 대한 금융위 평가

○ 이용편의성과 접근성 제고, 유지비용 절감을 통한 금융부담 경감,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공급 저변 확대는 긍정적인 효과

---

3) 금융연구원 분석결과,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성과 평가 및 시사점」, 이수진 등, 2024.9
단 , 해외진출 등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관련 성과에 대해서는 계량화의 어려움으로 분석에서 제외

4) 인뱅 영업초기 중금리대출과 중·저신용자 신용공급, 차별화된 신용평가시스템 구축은 기대에 못미친 것으로 평가. 이에 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계획」발표. 그 결과 인뱅의 중저신용대 신용대출 확대와 대안정보 활용 신용평가시스템 구축 본격화

5) 시장지배력은 러너지수(러너지수= $\frac{p-mc}{p}$, 완전경쟁시장에서는 러너지수가 0이 되며 불완전경쟁시장은 $p > mc$가 되어 러너지수는 양수가 되며 이 값이 커질수록 시장지배력이 큰 것으로 해석)를 이용해 분석. 가격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계비용이 상승하면 그 값이 하락하며, 은행의 총비용 상승은 러너지수 하락을 야기. 2021년8월부터 시작된 기준금리 인상, 금융당국의 대환대출인프라구축(2023년5월 시행), 예대금리차 공시 강화(2023년 7월) 등 정책이 경쟁을 촉진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 인뱅3사의 자금조달 안정성, 금융정보와 기타 대안정보를 결합한 신용평가모형 고도화 및 이를 통한 중저신용자 자금공급 등에 있어 당초 계획대비 미흡

– 신용평가모형 고도화가 충분치 않아 중저신용자 대출 목표 이행과정에서 부실확대 문제 발생

3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추진 현황

□ 제4 인뱅 인가 추진 경과

○ ('23.7) 과점구조인 은행산업의 경쟁도를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인터넷전문은행**의 **신규 인가 방침**을 공식 **발표***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방안」(금융위·금감원 보도자료)

○ ('24.11) 기존 인뱅의 미비점을 고려한 **인가 심사기준**을 발표

– 이는 기존 3社로는 **인뱅 설립 취지**인 **중·저신용자 대상 금융공급**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에 기인

<기존 인뱅 미비사항을 고려한 중점 심사기준>

- **(자금조달 안정성)** 충분한 자본력과 대주주로부터의 원활한 추가 자금조달을 통한 안정적인 시장안착 가능성*
- **(사업계획의 혁신성)** 기존 금융권의 상품·서비스 공급상 한계가 있는 분야에서 금융관행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혁신적 사업모델'제공 여부
- **(사업계획의 포용성)** 기존 금융권에서 자금공급이 충분하지 못했던 분야(고객군+지역)에 대한 자금공급계획
-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사업계획의 이행담보를 위한 인가조건 부과

---

* 대주주의 자금공급 능력과 주요주주의 납입확약서 및 자금조달 방안 확인

□ 업계의 제4 인뱅 인가신청 관련 현황

○ ('25.3) '더존뱅크 사업자' 등 **총 6개의 컨소시엄**이 인가를 준비했으나 더존뱅크와 유뱅크는 이를 철회하며 4개 컨소시엄만 신청

– ('25.2) **한국신용데이터·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소호은행 설립을 위한 협약 체결**

○ ('25.9) 4개 컨소시엄에 대한 심사 결과 예비인가 불허 결정

<참고> 제4 인뱅 컨소시엄 참여(검토) 기업

사업자	참여(검토)기업	특화분야
더존뱅크	더존비즈온, 신한B, NH농협B(검토), DB손보(검토)	소기업·소상공인
소호은행	한국신용데이터, 우리은행, 우리카드	
소소뱅크	소소뱅크 설립준비위원회(35개 소상공인 등), 11개 ICT기업	
유뱅크	렌딧, 루닛, 삼쩜삼, 트래블월렛, 현대해상, 기업은행(검토)	
포도뱅크	한상펀드, 메리츠증권, 메리츠화재, 군인공제회	
AMZ뱅크	한국생명농업경영체연합회 등 농업 유관단체	농업인·MZ세대

*자본시장연구원(24.10.7), 「제4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 및 언론보도

□ 예비인가 불허 주요 사유

○ (일반평가) 4개 컨소시엄 모두 자금조달의 안정성과 사업계획 실현 가능성이 미흡

– 사업계획상 주대상고객의 신용도·상환능력 등을 감안해 충분한 자본력이 필요

– **대주주의 자본력이 미흡**하고 **주요주주가** 출자 관련 투자확약서가 아닌 **조건부투자의향서만 제출**하는 등 충분한 자본 조달 가능성 불확실

○ 개별 컨소시엄 평가

– (소소뱅크) 소상공인 금융기회 확대 측면은 긍정적이나, **대주주가 불투명**하고, 자본력과 **추가 자본출자 가능성 등이 미흡**

– (소호은행) 소상공인 금융기회 확대, 기술기업의 금융접목 혁신성 등은 긍정적이나, **대주주자본력·영업지속가능성 및 안정성이 다소 미흡**

– (포도뱅크) **대주주가 불투명**하고, **자본력과 추가 자본출자 가능성 등이 미흡**

– (AMZ뱅크) **대주주가 특정되지 못하고, 자본력과 추가 자본출자 가능성 등이 미흡**

지분 분산 및 지배주주의 특정 어려움으로 위기상황에서 필요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와 초기 약정액이 실제로 납입이 이루어질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

※ 케이뱅크의 경우 영업개시 후 증자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토스는 취약한 주주구성을 이유로 최초 예비인가에서 탈락 사례 존재

4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지분 구조 (안)

○ 초기 자본금 규모 : 2,000억원 이상

※ 카카오뱅크(2,500억원), 케이뱅크(3,000억원), 토스뱅크(2,500억원)

- 제4인뱅 신청자의 초기 자본금 규모는 알려져있지 않음
- 금융위 심사기준에서 자본금 및 자본조달방안에 대한 배점을 상향(100점→150점)
- 자본조달 안정성 세부평가기준(①충분한 초기자본금 보유, ②대주주 자금조달 능력, ③추가 자본 확충 계획 실현 가능성)을 미루어 초기 자본금으로 **최소 2,000억원 이상** 필요

○ IT대기업 중 기존 인뱅 미참여 기업이 최대주주로 참여하여 시중·지방은행과의 협력 구조를 통해 금융당국에 추가 증자 및 리스크관리 능력에 대한 확신을 줄 필요

- 최대주주 : 네이버·쿠팡·당근·배달의민족 등 대형 ICT 기업(50%)
- 금융사 : 20~30%(신한·NH·BNK*) *기존 인뱅 미참여
- 부울경 소재 기업 및 부산 이전 해운기업 : 넥센타이어·SNT·SK해운·에이치라인
- 지자체는 행정 및 정주지원으로 역할 한정

5 부산 금융중심지 측면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 필요성

○ 부산은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 자본시장 인프라를 보유해 기초적인 금융기반은 갖춤

○ 해운·물류·중소기업 중심의 지역 산업 구조에 비해 이를 지원하는 디지털 기반 산업금융 체계는 상대적으로 미흡

– 특히, 데이터 기반 신용평가, 금융기관 간 연계,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의 연결 구조가 부족하여 금융공급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단순한 금융기관 확충이 아닌, 산업과 금융을 연결하는 디지털금융 인프라 구축이 필요

– 최근 산업구조의 디지털화에 따라 기업의 영업활동, 매출, 물류 흐름 등이 실시간 데이터 형태로 축적

– 가존 금융은 여전히 재무제표와 담보 중심 평가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이러한 데이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

– 실제 상환능력을 보유한 기업임에도 금융접근성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으며 이러한 영역에서 디지털전문은행이 포용금융과 혁신성 발휘 가능

□ 기대 효과

○ 금융포용 및 금융접근성 확대

– 중저신용자 및 소상공인 대상 금융 접근성 제고

– 비대면·데이터 기반 심사를 통한 금융 이용 편의성 개선

– 기존 신용평가 체계에서 소외된 차주에 대한 금융기회 확대

○ 산업금융 기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 해운·물류 등 지역 주력 산업에 대한 맞춤형 금융 공급

– 운전자금 및 성장자금 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

– 정책금융(한국산업은행 등)과 민간금융 간 연계 강화

○ 디지털금융 인프라 구축 및 금융중심지 경쟁력 제고

– 데이터 기반 금융서비스 및 신용평가 체계 구축

– 핀테크·금융기관 참여 확대를 통한 금융생태계 조성

– 부산 금융중심지 기능 고도화 및 장기적 금융혁신 기반 마련

□ 향후 발전 방향

○ 현행 법령 범위에서 안정적 사업수행과 향후 금융혁신제도를 활용해 서비스 고도화 추진

– 데이터 기반 신용평가 고도화

– 타 금융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고객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기능 확대

– 고객의 사업정보 및 거래 데이터 기반 정책금융 상품 자동 추천, 대출 및 보증 원스톱 신청, 정책금융 이용 가능성 사전 진단 및 연계 등 정책금융 접근성 개선을 위한 디지털 기반 통합 서비스 도입

6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부산지역 설립 추진 방향

1. (1단계)부산시 중심으로 제4인뱅 유치방안을 설계하여 금융당국에 제안

□ 금융위의 신규 인뱅 **인가추진방안의** 인가 조건으로 **본사 부산** 설립을 전제로 부산시가 협의 추진

○ ①인뱅의 경우 **영업활동이 지리적 위치와 무관**하며 ②**'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민경제의 목표와도 **부합**하고 ③**부산은 금융중심지**로 지정되어 있으며 ④정부의 **금융중심지 조성·발전** 추진 **책무**에 부응할 필요(「금융중심지법」 §3)

※ 지역금융 기여도 강화 측면에서 심사사항에 부합

○ 민간기업 대상으로 부산유치를 설득하는 것보다 **정부의 인가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시기적·정책적 목표에 부합

○ 필요 시 **금융기회발전특구**에의 유치와 연계하여 협의 추진

□ 본사 부산유치를 위해 **부울경지역 금융기관 등의 컨소시엄 참가** 필요

○ 부울경 금융기관·ICT기업[4]을 컨소시엄에 참여할수 있도록 독려

– BNK금융지주 계열사[1], 부산시 출자 펀드(부산미래성장벤처펀드 등)[2], 부산지역 VC[3], 이전 공공기관 등

1) BNK캐피탈, BNK투자증권, BNK저축은행, BNK자산운용, BNK벤처투자 등
2) 중기부 모태펀드 자금 등을 포함하여 총8천억원 가량 운용 중
3) 메이플투자파트너스 등 7개사(부산에 본사를 둔 VC기준)
4) 부산상공회의소 등을 통해 부울경 ICT기업 물색 추진

※ 대외 신뢰도 제고를 위해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참여 검토 필요

□ 제4인뱅 예비인가가 무산된 상황에서 당국은 **수시 신청/인가** 방식으로 갈 것으로 밝힌 바 있으므로 향후 대형 ICT기업과 시중은행 및 BNK금융계열사와 지역 상공계 중심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준비** 필요

○ 기존 금융중심지 추진방향과 연계하여 해양금융·블록체인·핀테크 관련기업 대상 금융에 특화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미국 SVB모델 등) 등*

*일반적으로 인뱅 인가 시 기존 은행과의 차별성, 중저신용자·중소기업 중심의 사업모델 구축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

2. (2단계)부산 대표기업(정책금융기관·BNK·ICT기업 등)을 중심으로 주주단 구성

□ (자본금) 법상 인뱅 설립을 위한 최소 자본금은 250억원이나 실제 인가를 위해 약 **2,000억원** 가량의 자본금 필요 (붙임2 참조)

□ (주주구성) 법상 주식보유한도 제한에 따라 **다수 출자자**가 필요하며 특히 인뱅 설립취지에 부합하도록 **ICT기업의 참여**가 필수적

○ 은행의 주주는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 보유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당국의 승인하에 초과 보유 가능

– 다만 인뱅의 경우 특례법을 통해 비금융주력자(ICT기업 등)에 대해 34% 이내 주식보유 허용

○ 인뱅 설립 취지가 금융-ICT 융합을 통한 중·저신용자 대상 금융 공급 활성화이므로 이에 부합하는 ICT기업 참여가 필수적

□ (출자자 검토) 부울경지역 인뱅 설립을 위해 지역의 대표 금융기관인 **BNK금융지주 계열사**와 그 외 **부울경지역의 ICT기업** 참여가 필요

○ 그러나 **BNK지주·부산은행·경남은행**의 경우 최근 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등 중징계 제재*받아 신규 사업참여 가능성에 **불확실성** 있음

– 통상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는 최소 1년간 신사업 진출을 위한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는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며 서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여 지분을 합산하여 대주주 여부 판단**

* BNK금융지주·부산은행 : BNK금융지주 주가 시세조정으로 기관경고('24.7.12.)
경남은행 : 내부직원의 3000억원대 횡령사고로 영업일부 정지 처분('24.11.27)
※ 금융사에 대한 당국 제재는 기관주의-기관경고-영업정지 및 등록·인가 취소 등으로 나뉨

○ 또한 부울경 지역 ICT기업*, 기타출자자 물색 및 설립참여에 많은 시간 소요 필요

* 한화시스템, LG CNS, 삼성SDS, SK C&C 등 지역에서 운영되는 대기업 계열 및 마린웍스 등 특정 분야 데이터를 보유한 IT 기업 등

7 결론 및 시사점

□ 기존 인뱅은 금융소비자 편의성 제고와 디지털 금융 확산 측면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중·저신용자 금융공급 확대 및 은행산업 경쟁 촉진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에는 한계를 보임

○ 따라서 신용평가모형 고도화와 자본력 기반의 리스크 관리 능력이 신규 인가심사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임

□ 제4 인뱅 예비인가가 모두 불허된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자본조달 안정성 부족과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미흡에 있음

○ 이는 단순한 혁신성이나 사업 아이디어만으로는 인가를 받을 수 없으며, 확고한 대주주 중심의 자본력, 지속적인 증자 가능성, 현실적인 수익모델이 필수 요건임을 시사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제4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은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접근 필요

① 대형 ICT기업 또는 금융경험을 보유한 안정적 대주주 중심의 지배구조 확립이 필요. 과거 사례와 같이 분산된 지분구조는 위기 대응력과 추가 자본조달 측면에서 한계를 노출할 가능성이 높음

② 초기 자본금 확보를 넘어선 중장기 자본확충 계획의 신뢰성 확보가 중요 단순 투자 의향 수준이 아닌 확정적 자금조달 구조와 단계별 증자 전략이 요구됨

③ 차별화된 사업모델 구축 필요. 기존 시중은행과 경쟁하는 범용 모델이 아닌,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 해양금융, 물류·항만 기반 금융, 핀테크·데이터 기반 신용평가 등 부산 지역 산업과 연계된 특화 전략이 인가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④ 지역 기반 금융생태계와의 연계 강화가 중요. 부울경 금융기관, ICT기업, 벤처캐피탈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지역 금융허브로서의 기능 강화할 필요

⑤ 부산 본사 유치를 위한 정책적 접근 전략이 필요. 민간 유치 방식보다는 금융당국의 인가 조건에 지역 요소를 반영하는 방식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

□ 종합하면, 제4 인뱅 설립은 단순한 신규 금융기관 설립을 넘어 자본력·혁신성·포용성을 동시에 충족하는 구조 설계의 문제이며, 부산의 경우 이를 지역 전략산업과 결합한 금융모델로 발전시킬 경우 금융중심지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붙임1 인뱅 인가절차 및 심사기준*

*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24.11. 금융위)

□ 인가절차

○ 신규인가 추진방안 발표 → 예비인가신청 접수 → (금감원) 금감원 및 외부평가위원회[1] 평가 → (금융위) 예비인가[2] → 본인가 신청접수 → (금융위) 본인가[3] 순서로 결정

1)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장 자문기구인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
2) 예비인가 신청 접수 후 2개월 이내 결정
3) 본인가 신청 접수 후 1개월 이내 결정. 본인가를 득한 사업자는 6개월 이내 사업 개시

□ 심사기준

○ 일반적으로 은행법령 및 인터넷전문은행법령에 따라 아래 항목에 대해 심사

- 자본금 및 자금조달의 안정성,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 사업계획, 발기인 및 임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등 물적시설 등*

* 항목별 세부내용은 금융위 보도자료('24.11.29)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 참조

○ 구체적인 평가항목 및 배점<참고>

- **중저신용자** 대상 금융공급 활성화라는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대출)모델 도출과 실현가능성, 자본력**을 바탕으로 **리스크 최소화 장치**가 주요 심사요인 될 예정

참 고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주요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내용	'15년	'19년	'24년
1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		100	100	150
자본금 규모	▸충분한 자본금 보유 여부	60	40	50
자금조달방안의 적정성	▸소요되는 자금조달의 현실성 및 실현가능성 ▸추가적인 자본조달방안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10 30	60	100
2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		100	100	50
대주주 적격성	▸주주의 소유규제 등 법률상 요건 적정성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적합성	-	-	-
은행주주로서의 적합성	▸은행의 건전성 및 금융산업 효율화 기여 ▸금융과 정보통신의 융합 촉진 혁신적	100	100	50
3 사업계획(혁신성)		350	350	350
사업계획의 혁신성	▸기존 금융권에서 공급하지 못한 혁신적 금융상품·서비스 제공 및 실현가능성	250	250	200
경쟁 촉진	▸기존 금융산업 경쟁도 제고			100
금융 발전	▸금융산업 부가가치 제고 등 발전기여	50	70	50
해외 진출	▸해외진출을 고려한 사업계획과 실천능력	50	30	
4 사업계획(포용성)		140	150	200
사업계획의 포용성	▸서민금융지원, 중금리대출 등 공급 및 실현가능성	100	120	120
	▸지역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계획 및 실현가능성	-	-	50
영업내용·방법의 적정성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 법규부합 여부	-	-	-
소비자보호체계의 적정성	▸소비자보호체계·조직 구성계획	40	30	30
5 사업계획(안정성)		210	200	200
사업계획의 안정성	▸적정 수익의 지속 창출 가능성 ▸장기간에 걸친 안정적 경영 가능성 등	50	100	100
리스크 대응방안의 적정성	▸대주주의 사업리스크 차단방안 ▸발생가능한 리스크에 대한 대응방안	40	25	25
수익추정의 타당성·실현가능성	▸수익전망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40	25	25
경영건전성기준의 준수	▸은행법에 따른 경영지도기준 충족여부	-	-	-
리스크관리체계의 적정성	▸리스크관리체계·조직의 구성계획의 적정성	40	25	25
경영지배구조의 적정성	▸이사회 등 구성계획의 적정성(지배구조법 등)	-	-	-
내부통제·준법감시체계 적정성	▸이사회·경영진·감사인 등의 구성 및 견제기능 등 ▸내부통제체계 구축의 적정성(임직원의 법규준수 등)	40	25	25
기타	▸금융당국 감독·검사의 법적 장애 유무 등	-	-	-
6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물적설비		100	100	50
인력 확보계획의 적정성	▸전문인력 및 전문성 유지를 위한 연수제도 등	-	20	10
영업시설 확보계획의 적정성	▸업무공간 및 정보차단벽의 적정성 등	-	20	10
전산체계 등	▸정보처리시스템 관리방안 및 보안시스템 적정성 등	100	60	30
※ 외국 금융회사(외국 금융회사의 지주회사 포함) 신청시 은행법령을 준수하는지 여부		-	-	-
합 계		1,000	1,000	1,000

붙임2 과거 인뱅 설립 자본금 및 주주구성내역

사업자	인가일 (사업개시일)	설립 자본금	주주구성
케이뱅크	'16.12월 ('17.4월)	2,500억	BC카드(34%), 케이티, **우리은행**, NH투자증권, GS리테일, 한화생명보험, KG이니시스, KG모빌리언스, 에잇퍼센트, 다날, 포스코ICT, 한국관광공사, 얍컴퍼니, DGB캐피탈, 모바일리더, 이지웰페어, 브리지텍, 한국정보통신, 인포바인, Alipay(Hong Kong) Investment Ltd, 스마일게이트, 민앤지 (총21개사)
카카오 뱅크	'17.4월 ('17.7월)	3,000억	한국투자금융지주(27%), 카카오(27%), **국민은행,** 넷마블게임즈, 서울보증보험, 우정사업본부, 이베이코리아, 예스이십사, Skyblue Luxury Investment Pte. Ltd. (총9개사)
토스뱅크	'21.6월 ('21.10월)	2,500억	비바리퍼블리카(26%), **하나은행(9%),** 한화투자증권, 중소기업중앙회, 이랜드월드, SC제일은행, 웰컴저축은행, 한국전자인증, Altos Ventures, Goodwater Capital, Ribbit Capital (총11개사)

붙임3 인터넷전문은행 주주요건

지분보유 제한, 재무건전성 요건, 과거부실금융기관 관련 책임이 없을 것, 일정수준이상 형사처벌 받은 전력없을 것을 요구

가. 일반 주주

□ (일반은행·인뱅) 동일인은 지분 10%를 초과보유할 수 없음(10%까지는 금융위 승인없이 자유롭게 취득가능) 다만 금융위 승인을 득한 경우 예외.[6]

□ (비금융주력자)

○ (일반은행) 비금융주력자는 4% 초과보유할 수 없음.
단 의결권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융위 승인(재무적요건 충족필요)을 득해 10%까지 보유 가능.[7]
10% 초과보유는 금융위 승인과 관계없이 불가능.

○ (인뱅) 비금융주력자는 당국승인 얻어 인뱅 주식 34% 이내에서 보유 가능[8]

- 단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대기업 집단)은 비금융주력자라도 10%초과 보유 못하나, ICT주력그룹*은 예외적으로 허용[9]

* 50% 이상이 ICT관련업. ICT기업이란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정보통신업 영위 기업

나. 대주주의 경우

※ (대주주 정의)[10] 인뱅 주주 동일인이 ①10%초과 보유('한도초과보유') 하거나, ②4%초과 보유 & 최대주주 거나, ③4%초과 보유 &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 ①*비금융주력자* or ②*비금융주력자가 아닌자* 에 따라 은행법시행령 별표1&2, 인뱅법 별표의 자격요건 필요[11]

---

6) 은행법 제15조①,③,⑤항
7) 은행법 제16조의2①,②항
8) 인터넷전문은행법 제5조①,②항
9)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령제2조②항1호,2호
10) 은행법 제2조①항10호
11) 은행업 감독규정 <별표2-2> 2호나목